

문서번호	BSKS-3-1-68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4

2011.12.30.개정 2019.07.16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실습용 기계 기구 및 재료 (이하 "기자재"라 한다.)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각 학과 (이하 "학과"라 한다.)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자재와 실 습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2 장 조 직

- 제3조(기자재 관리자 지정) 기자재에 대한 관리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 - 1. 기자재 관리관(이하 "관리관"이라 한다.)은 총장이 되며, 기자재의 관리 운용 업무를 관장한다.
 - 2. 기자재 출납원 (이하 "출납원"이라 한다.)은 사무처장이 담당을 지정하며, 기자재의 구입의뢰, 검수 및 모든 기자재의 출납에 관한 총괄 업무를 사무처장이 관장한다.
 - 3. 기자재 운용원 (이하 "운용원"이라 한다.)은 각 학과장이 되며, 소관 기자재의 검수, 운용 및 보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 - 4. 기자재 보관원 (이하 "보관원"이라 한다.)은 각 학과의 조교로 하고, 각 운용원을 보좌하여 소관기자재의 보관, 운용, 유지, 수선 및 정비를 담당한다.

제 3 장 관 리

- 제4조(장부 등의 비치) ① 기자재를 취득하였을 때는 출납원과 운용원은 실습기기 카드와 실습관리대장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 소모성 재료를 취득하였을 때는 운용원은 재료 수불부를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 - ③ 보관원은 실습 및 기자재운용 결과를 실습일지에 매일 작성하여 운용원의 확인을 받고 정기적으로 출납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기자재의 사용범위) ① 학생실습용

- ② 교수학술연구용
- ③ 전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. 그 외 용도에 사용할 시 운용원은 출납원



문서번호	BSKS-3-1-68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4

을 경유, 관리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.

- **제6조(기자재관리의 관리전환 및 설치장소 변경)** ① 각 학과 간 기자재관리 관리전환을 요할 때 운용원은 관리전환신청서를 작성, 출납원을 경유, 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학과 내에서 실습 기자재의 설치장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운용원은 출납원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7조(실험·실습기자재 및 기자재대장인계, 인수) 운용원 교체 시 실험·실습기자재 및 기자 재대장 전반에 대하여 전임 운용원과 후임 운용원은 필히 인계·인수하여야 한다.
- 제8조(소모성재료의 사용) ① 1회 또는 단순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실습 재료는 제4조 2항에 따라 사용하되 각 운용원은 그 사용으로 인한 소모 상황 및 재고 란을 정리 기재하여 출납원에게 학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전 규정에 의거 재고 란에 남은 소모성 실습재료는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9조(재물조사) ① 기자재의 재물조사는 연 1회의 정기 재물조사와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한다.
 - ② 재물조사는 출납원 책임 하에 실시하되 운용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출납원은 그 결과를 작성하여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**제10조(망실과 변상)** ① 기자재의 사용 부주의로 도난 및 망실을 하였을 때에는 관리관은 운용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기자재의 대출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운용원은 사유를 규명하여 출납원을 경우 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대출 받은 자는 파손 또는 망실 된 장비와 동등한 물품을 변상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실습 중 자연적인 파손 또는 마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1조(기자재보수 및 수리) ① 1차적인 보수 및 수리는 학과 자체에서 한다.
 - ② 학과에서 보수 및 수리할 수 없는 기자재는 기자재 수리 요구서 및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에 신청한다.
- 제12조(불용 및 폐기처분) 재물조사 결과 및 기자재운용과정에서 불용품이나 폐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운용원은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기자재의 표시) 운용원은 모든 기자재에 실습 기기 운용카드를 잘 보이고 마멸되지 않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자재가 극히 작거나 다수가 모여 1조를 이루는 경우 개별적으로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표지판으로 대치할 수 있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68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4

- 제14조(기자재설명서관리) ① 기자재 구입 시 각종설명서(Catalogue, Manual)의 유무를 필히확인한다.
 - ② 설명서는 운용원이 일괄 보관한다.
 - ③ 외국어로 된 설명서는 이를 번역하여 보관한다.
 - ④ 고가품 및 주요기자재의 설명서는 도서목록화 하여 보관한다.
 - ⑤ 운용원 교체 시 설명서를 필히 후임 운용원과 인계, 인수하여야 하다.
- 제15조(실습) ① 실습계획서는 해당 학기 전 계획을 수립·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작업지시서는 실습계획서에 의거 작성하여 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실습실안전, 청결, 방화 및 정비) 운용원은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정기적인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실습실에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안전수칙이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2. 실습실은 실습이 종료되면 반드시 청소를 하여 깨끗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사용한 기자재는 손질하여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.
 - 3. 실습실에는 방화,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- 4. 기자재는 항상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5. 기자재는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마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분해정비를 하여야 한다.
 - 6. 점검이 필요한 기자재에 대하여 점검표를 비치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기자재의 사용 신청 및 대여) ① 연구기자재를 사용 및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기자재 사용 신청서를 소속장에게 신청하고 소속장은 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해당 소속장은 사용 신청서의 사용일정과 연구기자재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- 제18조(실험·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) 실험·실습기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험·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07.16.>
- 제1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업무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68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4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